

- “소명 기회 부여 통지서”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에 관한 본인의 입장과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기 위한 문서입니다.
특별요양비 지급에 관하여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별요양비가 지급될 때는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일단 전액을 부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가 된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피보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비 부담 의료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공비 부담 의료 수급자 신고서(양식 제4호)”를, 한편,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신고서(양식 제2호)”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기한 경과 후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